

WIPO와 UNEP(유엔환경계획)이 공동주관한 전통지식관련 연구보고서 발표

2월 10일 말레이시아 Kuala Lumpur에서 열리고 있는 생물다양성조약 회원국간의 「세계야생생물에 대한 국제회의」(2/9 - 2/20)에서 WIPO와 UNEP가 공동으로 주관했던 연구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 연구과제의 주된 주제는 그러한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따른 이익의 분배”였다. 즉 동 연구보고서는 전통 지식과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각 국가와 공동체와 원주민들이 최선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복잡성의 문제와 이러한 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따른 이익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가에 대한 현실성의 문제가 부각되었다.

동 연구는 WIPO와 UNEP의 주관하에, 유전자원과 전통지식과 관련된 이익분배문제에 대한 세계적 권위자인 인도의 Anil K. Gupta교수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동 연구보고서는 현재 자발적인 협정들의 부족을 지적하고, 유망한 농업적 발견들의 근거가 되는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으로부터 도출되어지는 이익의 일정 지분을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진정한 보유자들에게 주어지도록 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안한다. 또한 동 연구보고서는 두가지 대표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확실한 피로회복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도의 식물로부터 추출되는 “기적의 약품(wonder medicine)”이고 또 하나는 야생의 서부 아프리카 쌀로부터 추출된 유전자로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생명공학산업에 사용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경우는 이 분야의 잠재적 이익과 현재의 이익분배협정의 합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페니실린, 싸이클로스포린 등 가장 판매가 많은 약품과 항암제인 택솔 등은 자연으로부터 추출되고 전통적인 의약지식은 새로운 약품개발을 위한 방법을 시사하기도 한다. 또한 미래에도 의약품과 개량작물의 유전자 등은 식물이나 동물로부터 얻어질 것이고 특히 유전자원이 풍부한 개도국에서 얻어질 것이다.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으로부터 도출되어지는 이익의 일정 지분을 진정한 보유자에게 주어지도록 방법 제안

따라서 소위 “접근과 이익의 분배 시스템(access and benefit sharing system)”의 목적은 동식물 자원으로부터 이러한 과학기술적 발전을 진흥하고 동시에 이러한 자원을 재배하고 보존하는 사람들에 대한 권리와 기여를 인정하고

또한 그들의 이용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과 이익의 분배 시스템”에 대한 발전적이고 공평한 국제제도의 성립에 관한 문제는 생물다양성조약 회원국간 이번 회의에서 중요한 안건이 될 것이다. 최근들어 “접근과 이익의 분배”에 관한 「본 기준(Bonn Guidelines)」이 몇몇 국가간에 채택되었다. 이 자발적인 규칙에는 생물검색(bio-prospecting)을 수행하는 기업과 과학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개설했고 아울러 이익이 되는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와 공동체의 역할과 책임을 함께 개설했고 있다.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결국 현재까지의 이러한 기업, 국가, 공동체간의 자발적 협정이 발전적인 방법인지 아니면 국제적으로 기속력을 갖는 조약의 체결로서 강화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출처 www.unep.org

일본 신탁 3업무 등록제로 하여 기업의 참가 촉구 - 법개정안 내용

일 본정부가 정기국회에 제출을 예정하고 있는 신탁업법 전면개정안의 내용이 알려졌다. 타인의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신탁제도를 근본적으로 확충하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금융기관에 한정된 신탁업무를 기업에 허용하기 위해, 면허제인 신탁업에 추가하여 새로이 3가지 유형의 업무를 참가가 용이한 등록제로 하려고 하는 것이다.

신규참가에 의한 경쟁촉진으로 신탁 관련 서비스의 질 향상과 이용확대를 도모한다. 또 신탁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특허권이 나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등에도 확대하여 기업의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의 신탁업법은 1922년에 제정되었으며, 전면개정은 약 80년 만이며 정부는 국회심의를 거쳐 가을에 개정법을 시행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금전, 유가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등을 열거하여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열거하지 않고 경제적 가치로 평가될 수 있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신탁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탁은행 등의 금융기관에만 인정되어온 신탁업무를 기업에도 허용한다. 모든 신탁업무를 하는 「신탁업」은 현행법과 동일하게 면허제이지만 새로이 인정되는, 재산의 관리와 신탁자의 지도에 따른 처분만 하는 「관리형신탁업」, 신탁회사와 계약으로 대리점업무를 하는 「신탁계약대리업」, 부동산이나 특허권 등을 증권화 한 신탁수익권을 투자자에 판매하는 「신탁수익권판매업」을 각각 등록

제로 도입한다.

이것으로 벤처기업 등의 특허권 등을 활용하여 자금 조달하는 신탁회사의 설립이나, 기업이나 아티스트 등이 특허권이 나 저작권에 의한 수입을 관리하는 신탁회사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신탁제도의 활용 범위가 확대된다. 보험회사나 증권회사의 신탁계약 대리업 참가도 예견된다.

대학의 개발기술을 특허화 하여 민간에 이전하는 기술이전기관(TLO)에도 등록제로서 신탁업무를 인정하는 외에, 대기업이 그룹회사의 특허권 등을 일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신탁회사설립은 특례로서 신고제로 하는 등으로 하여, 신제도의 이용확

대를 목표로 한다.

신규참가기업의 최저자본금에 대해서 금융청은 모든 신탁업무가 이루어지는 신탁회사는 일역엔, 관리형 신탁회사는 5,000만엔으로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경제계에서 관리형 신탁회사는 1,000만엔까지 인하하도록 하는 의견도 있어 차후 검토하여 정부에서 정한다.

※ 「신탁」이라 함은 재산의 소유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 재산권을 이전하여 관리, 처분을 위탁하는 제도이다. 개인이나 기업이 보다 커다란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의 운용을 신탁회사에 위탁하는 「자익신탁」과 재산을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 등에 주어 공익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위탁하는 「타익신탁」이 있다.

출처 요미우리신문

타인의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신탁제도를 근본적으로 확충하는 내용